

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현황

(단위: 원)

구 분	건수	지출결정액 ①	지출원인 행 위 액	지출액 ③	이월액④ (①-③-⑤)	불용액⑤ (①-③-④)
계	38	1,139,773,000	1,049,476,330	979,555,330	69,921,000	90,296,670
일반회계	37	1,069,852,000	979,555,330	979,555,330	-	90,296,670
특별회계	1	69,921,000	69,921,000	-	69,921,000	-

□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승인안을 불임과 같이 심의 의결 요구함.

□ 주요골자

- '99년도 예비비는 14억 236만 8천원을 확보하여 일반회계의 경우 수해복구 비용등으로 37건에 979,555,330원을 지출하였습.
- 또한,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파주첨단산업단지 기본설계용역 비용으로 69,921,000원을 지출하였습.

□ 검토의견

-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사태등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임.
- '99년 7월 31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바 응급복구 자재비등 재해대책과 2000년도 당초예산에 명예 및 조기퇴직 수당을 확보하였으나 신청자가 많아 부족되는 명예 및 조기퇴직 수당을 충당하기 위하여 많은 예비비를 지출하였습.
- 월릉면 위전4리 주민들이 (34세대/119명) 개인 정호를 이용하던 것을 지하수 고갈 및 오염등으로 생활용수 부족난을 해소하고자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,
- 침수피해 정부양곡 운송비로 13,136천원을 예비비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미 집행한 것은 정확한 분석없이 지출을 결정한 것으로 예비비지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.
- 특별회계에 있어 파주첨단 산업단지 기본설계 용역비 또한 69,921천원을 '99. 12. 9일 사용승인을 받고 집행치 아니하고 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